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07.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4. 29.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4.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
영 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김준혁의원)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및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존 법령은 대학교원의 임용에 대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원의 채용과 비교하여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해 왔으며, 교사와 달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해 대학교원

의 신규채용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2025.2.27.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된바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조항 중 제11조의3을 준용하나, 제11조의5는 준용하지 않게 됨.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도 준용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할뿐,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준혁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